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기능대학 분교 설치 근거 마련 등 〉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1126호)

2024. 9.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서 제도 마련	4
2. 기능대학의 설립·경영 추천자 변경	22
3. 기능대학의 중요 사항 변경 권한을 고용노동부장관에 위탁	25
4. 기능대학 분교 설치 근거 마련	28
5.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요건 변경	32
6. 반환금·추가징수금 관련 준용규정 변경	44
7.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결격사유에 따른 자격취소 시 청문절차 생략 ..	48
8. 제29조제6호 조문 정비	52

I. 제안경위

2024년 6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기업의 현장 수요와 지역 여건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계획서 승인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간주 제도를 도입하고, 기능대학 설립 추천 권한을 고용노동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며,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되, 그 권한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기능대학의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요건을 학력과 경력 요건의 선후관계와 무관하게 두 요건을 모두 갖추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완화하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되는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격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서의 승인 등(안 제24조의2 신설)

기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를 높이고 현장 수요에 맞게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할 수 있도록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등이 포함된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서를 제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나. 기능대학의 설립 추천권한 이양, 중요 사항 변경 인가 및 분교 설치 근거(안 제39조제3항, 안 제39조제5항, 제39조의2 및 제50조제2항 신설)

1)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중 학교법인의 기능대학 설립 추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2) 일반대학과 다른 기능대학의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기능대학의 명칭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변경 인가를 받도록 하되, 그 권한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기능대학의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요건 정비(안 제40조의2제4항)

기능대학 졸업 이전에 관련 분야 산업체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학력과 경력 자격을 모두 충족함에도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요건으로 같은 계열의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관련 분야 경력을 갖추도록 하던 것을 기능대학 졸업 이전에 관련 분야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함.

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시 청문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 (안 제62조제5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되거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는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절차법」 제21조·제22조에 따르면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

Ⅲ. 검토의견

1.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서 제도 마련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사업주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훈련계획서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24조의2 신설), 훈련계획서 제도 도입에 따라 관련 조문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¹⁾(안 제19조제3항 등).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 ①·② (생략)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	제1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이 해지된 자,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이 취소된 자 및 종전에 훈련계획서 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훈련계획서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안 제19조 및 안 제24조)
- ▲ 훈련계획서 승인 제한 기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그러한 기간에 있는 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인 경우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및 제32조)
- ▲ 승인된 훈련계획서에 포함된 훈련과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37조)
- ▲ 훈련계획서의 승인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
- ▲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원·용자를 받으려는 자가 훈련계획서 승인 관련 부정행위를 공모하여 해당 훈련계획서 승인이 취소된 경우 5년 동안 지원·용자 제한(안 제55조)
- ▲ 훈련계획서 승인이 취소된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용자를 받은 경우 등 해당 금액의 반환을 명할 때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6조)
- ▲ 훈련계획서 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위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훈련계획서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출입조사 등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의2 및 안 제58조)
- ▲ 훈련계획서 승인 취소 시 청문 실시 근거 마련(안 제62조)

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중 훈련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해지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④ ~ ⑥ 삭제

⑦ (생략)

제19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계좌 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인정이 취소된 자 중 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 다음 각
호의 위탁이나 인정·승인-----

-----.

1.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2.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3.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서의 승인

⑦ (현행과 같음)

제19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계좌 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다음 각 호의 위탁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제1항 및 제24조에 따른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④·⑤ (생략)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대하여 인정이 취소된 자 중 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제1항 및 제19조에 따른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인정·승인-----

-----.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2. 제1항 및 제2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3.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서의 승인

④·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다음 각 호의 위탁이나
인정·승인-----

-----.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2. 제1항 및 제19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3.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직업능

④·⑤ (생략)

<신설>

능력개발훈련계획서의 승인

④·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서의 승인 등) ① 제20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등은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서(이하 “훈련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훈련계획서에 포함된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에 대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훈련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계획서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훈련계획서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인정도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훈련계획서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 또는 용자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3.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4.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10조의2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6. 제58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
 7. 제58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에 의한 관계 서류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
- ④ 제3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자(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여 승인이 취소된 자 중 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위탁이나 인정·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결격사유) 제28조에 따른 지정 직업훈련시설을 지정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8조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 8. (생략) 9.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의 제한 또는 제19조제3항·제24조제3항에 따른 인정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 10. (생략) 제32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 ① (생략)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2.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3. 제1항에 따른 훈련계획서의 승인 ⑤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유효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기간·내용, 훈련시설 등 훈련계획서 승인의 요건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결격사유) ----- ----- ----- -----. 1. ~ 8. (생략) 9.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의 제한, 제19조제3항·제24조제3항에 따른 인정의 제한 또는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승인²⁾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 10. (현행과 같음) 제32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 ① (현행과 같음)
--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의 제한 또는 제19조제3항·제24조제3항에 따른 인정의 제한을 받거나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6.·7. (생략)

③ ~ ⑤ (생략)

제37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훈련 또는 훈련과정에서 가르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은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補修)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1.·2. (생략)

3. 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의 제한, 제19조제3항·제24조제3항에 따른 인정의 제한 또는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승인의 제한을 받고 있거나³⁾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6.·7.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7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 ① (현행과 같음)

② -----

-----.

1.·2. (현행과 같음)

3. -----

으로부터 인정받는 제20조제1
항제1호의 근로자 직업능력개
발훈련과정(사업주로부터 위탁
받아 실시하는 훈련과정에 한
정한다)

③·④ (생략)

제53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자에 대하여 훈련실시 능
력, 훈련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2. (생략)

<신설>

3.·4. (생략)

②·③ (생략)

제5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용자
또는 수강의 제한) ① (생략)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7조, 제1
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비용의 지원 또는 용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사람,
사업주, 사업주단체등, 산업부문

----- 인정(제24조의2제2항
에 따라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③·④ (현행과 같음)

제53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① -----

-----.

1.·2. (현행과 같음)

2의2.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훈
련계획서의 승인을 받아 직업
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자

3.·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5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용자
또는 수강의 제한) ① (현행과 같
음)

② -----

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용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날(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원 또는 용자를 아니할 수 있다.

1. (생략)

2. 제16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자 또는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와 공모하여 제19조제2항 각 호 또는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인정이 취소된 경우

-----.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모하여 제19조제2항 각 호, 제24조제2항 각 호 또는 제24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인정 또는 승인이 취소된 경우

가. 제16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자

나.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

3. (생 략)

제56조(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및 추
가징수) ① (생 략)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9조제2
항이나 제24조제2항에 따라 인정
이 취소된 자 또는 제55조제2항
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용자가
제한되는 사람, 사업주, 사업주단
체등,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
의체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하
여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③ (생 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가 거짓된 신고·보고
또는 거짓자료 작성·제공 등을
함으로써 다른 자로 하여금 거짓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용자를 받게 한 경우
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용자를 받은
자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

련을 실시하는 자

다. 제24조의2에 따라 훈련계획
서의 승인을 받아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

3. (현행과 같음)

제56조(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및 추
가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취소된 자, 제24조의2제3항에 따
라 훈련계획서 승인이 취소된 자

-----.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환 금액 및 제3항에 따른 추가징수 금액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1. ~ 3. (생략)

4. 제19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

⑤·⑥ (생략)

제56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또는 제19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반 행위, 처분 내용, 해당 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1.·2. (생략)

② ~ ④ (생략)

제58조(지도·감독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시설·장비·기자재, 훈련생의 출결, 직업능력

-----.

1. ~ 3. (현행과 같음)

4. -----

--- 인정을 받거나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훈련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

⑤·⑥ (생략)

제56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① -----

----- 자, -----

-- 취소된 자 및⁴⁾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자 ---

-----.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8조(지도·감독 등) ① -----

-----.

개발훈련교사의 자격 등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설>

4.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공공단체 및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5.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6.·7. (생략)

② ~ ⑤ (생략)

제59조(업무의 대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6조(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 업무로 한정한다),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8조, 제37조, 제38조 및 제53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24조의2에 따라 훈련계획서 승인을 받은 자

4. 제27조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

5.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6.·7.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9조(업무의 대행) ① -----

----- 제24조, 제24조의2-----

-----.

② (현행과 같음)

제62조(청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2조(청문)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u><신설></u>	<u>1의2.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훈련계획서 승인의 취소</u>
2. ~ 7. (생략)	2. ~ 7. (생략)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20조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는 사업주 등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⁵⁾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업주

-
- 2) 안 제24조의2제4항은 위탁, 인정 또는 승인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승인”을 “위탁, 인정 또는 승인”으로 자구 정리할 필요가 있음
- 3) 현행 제32조제2항제5호가 위탁의 제한이나 인정의 제한을 이미 받은 경우에 직업능력개발훈련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제24조의2 신설에 따른 내용을 제32조제2항제5호에 반영하는 것인바, “받고 있거나”를 “받거나”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4) 각각의 공표대상자가 동시에 공표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및”을 “또는”으로 자구 정리할 필요가 있음
- 5) 제20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이하 “사업주단체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검정사업
 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4.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기숙사를 포함한다) 및 장비·기자재를 설치·보수하는 등의 사업
 5.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조사·연구,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및 매체의 개발·보급 등의 사업
 6. 삭제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③ (생략)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사업⁶⁾을 실시하여 훈련비, 훈련수당, 숙식비 등 소요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현행법 제24조는 제20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비용지원 또는 용자를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 포함)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그 인정의 범위·요건·내용 및 유효기간 등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⁷⁾

훈련을 실시하려는 자가 훈련과정의 개시 7일 전까지 실시계획서, 증명서류를 첨부한 훈련과정 인정 신청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분사무소에 제출하면(사업주가 직접 실시하는 훈련과정의 경우 훈련과정의 5일 전까지 제출), 공단은 인정 신청 결과를 그 훈련과정 개시일 전날까지 통지서를 발급하게 됨.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자가 인정 내용을 변경(훈련내용 및 훈련방법의 변경은 제외⁸⁾)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5일 전까지 변경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인정 통지서를 발급받은 분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공단은 그 신청 결과를 변경예정일 전날까지 통지하게 됨.

그런데 정부지원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려는 사업주가 다수의 훈련과정을 통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6) 2024년도 고용보험기금 기금운용계획: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1152-350), 3,568억 2,800만원 편성

7) 관련 조문은 참고자료 참조

8)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명칭, 훈련장소, 훈련시설·장비 및 교사·강사 등을 변경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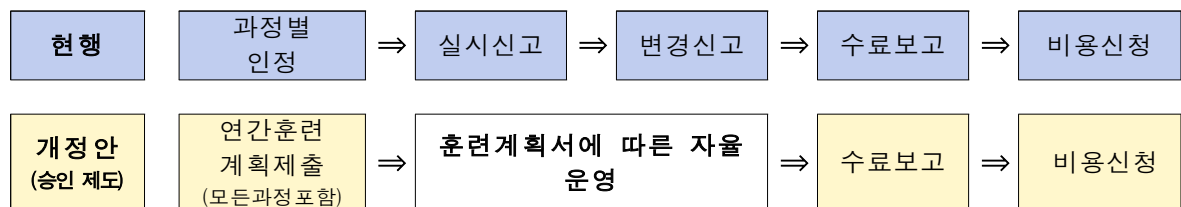
으로부터 사전에 훈련과정별로 인정을 받아야 하고, 그 인정 내용 변경 시에도 과정별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업무 담당자의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사업주 등이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안 제24조의2제1항),

다수의 훈련과정에 대하여 일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안 제24조의2제2항), 사업주가 과정별로 인정 절차를 반복하는 부담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현행 제2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인정과 비교할 때, 안 제24조의2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서 승인은 각 훈련과정 등이 포함된 훈련계획서를 작성하는 절차 외에 크게 다른 부분이 없고, 현재 운영 중인 시범 사업⁹⁾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데 의미가 있음.

9) [그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과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서 승인(시범사업)의 절차 비



※ 현재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훈련 참여 시 훈련과정 인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탄력운영제*(개정안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 제도과 동일)를 시범운영 중임

* 기업이 연간 훈련계획을 수립·제출하고 승인받은 경우 훈련과정의 편성·운영 단계별 별도의 개별 승인 없이 훈련 후 결과에 따라 훈련비 지원

다만, 현행 제56조의2제1항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취소 시 그 위반사실 공표의 기준을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56조의2제1항은 안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훈련계획서 승인이 취소된 자를 위반 사실 공표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각 호에서 해당 승인 취소자에 대한 공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므로, 훈련계획서 승인 취소된 자에 대한 공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안 제24조의2제6항은 훈련계획서 승인의 요건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훈련계획서 승인 후 변경 신고와 같은 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봄.

참고

현행 제24조 관련 참고 조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①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 또는 용자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3.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사업주·사업주단체등으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4.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사업주·사업주단체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용자받게 한 경우
- 4의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경우
5.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6.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제10조의2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8. 제58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
9. 제58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에 의한 관계 서류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대하여 인정이 취소된 자 중 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제1항 및 제19조에 따른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범위·요건·내용 및 유효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취소 사유별 구체적인 인정 제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① (생략)

② 법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인정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또는 기관의 명칭·소재지와 인정받은 사람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의 명칭·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2.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명칭, 훈련내용, 훈련기간·시간, 훈련방법, 훈련장소, 훈련시설·장비 및 교사·강사

3. 인정일

③ (생략)

④ 법 제2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신청 등) ① (생략)

② 법 제24조 및 영 제2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시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 실시되는 주된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분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의 개시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실시계획서

2. 영 제2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시설 또는 기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제외한다)

③ 법 제24조 및 영 제2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영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정 내용을 변경(훈련내용 및 훈련방법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 신청서에 변경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통지서를 발급한 공단의 분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의 개시 4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④ 공단은 제2항 및 제3항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그 훈련과정의 개시일 또는 인정내용의 변경예정일 전날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 통지서를 이용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첨부서류의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4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2. 기능대학의 설립·경영 추천자 변경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기능대학의 설립·경영 추천자를 현행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기능대학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변경하는 내용임(안 제39조제3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9조(기능대학의 설립) ①·② (생략)	제39조(기능대학의 설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학교법인이 기능대학을 설립 · 경영하려면 <u>고용노동부장관</u> 의 추천을 거쳐 <u>교육부장관</u> 의 인가 를 받아야 한다.	③ ----- ----- <u>기능대학 소재지를 관</u> <u>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u> <u>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u> <u>지사</u>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신설>	⑤ (생략)
⑤ (생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39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하 ‘학교법인’이라 함)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능대학을 설립·경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학교법인이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추천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추천자는 학교법인으로부터 기능대학설립계획서를 제출받아 인력양성 계획 등 설립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한 뒤 추천 여부를 결정하여 학교법인에 통보함.

최근 추천 사례를 살펴보면,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이 설립한 폴리텍 로봇캠퍼스(경북 영천 소재)는 2020년 2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의 추천을 거쳐 2020년 6월 19일 교육부의 설립인가를 받은 바 있음.

개정안은 기능대학 설립·경영 추천자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기능대학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변경하여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려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음. 이는 정부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에 따른 것임.

[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고용·노동 분야 이양 과제)

1. 외국인력 도입규모 결정·배분 시 참여 강화
2. 일자리 사업 수립·집행 권한
3. 고용 관련 인·허가 등 권한
4. 유해·위험기계 등 제조사업자 등록
5. 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및 관리, 지도·감독
6.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 권한
7. **기능대학 설립·경영 권한**
 - ▲ (현행) 기능대학(폴리텍) 경영에 지자체 참여 無, 설립 추천 권한은 고용부 장관이 보유 → (개선) 경영과정에 지자체 참여 + 설립 추천 권한도 지자체장이 보유
8.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등 지도·감독 권한

※ 자세한 내용은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참고

개정안에 따라 기능대학 설립·경영 추천권자를 지방에 이양한다면 사업계획 구상 단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어 업무의 효율성과 공공성이 증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다고 봄.

3. 기능대학의 중요 사항 변경 권한을 고용노동부장관에 위탁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기능대학 폐지 또는 기능대학의 명칭 및 위치 등 중요 사항 변경 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되(안 제39조제5항 신설) 그 권한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탁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9조(기능대학의 설립) ① ~ ④ (생략) <u><신설></u>	제39조(기능대학의 설립) ① ~ ④ (생략) <u>⑤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는 기능대학을 폐지하거나 기능대학의 명칭 및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u>
<u>⑤ (생략)</u> 제50조(기능대학에 대한 감독 등) ① (생략) <u><신설></u>	<u>⑥ (현행 제5항과 같음)</u> 제50조(기능대학에 대한 감독 등) ① (현행과 같음) <u>② 교육부장관은 제39조제5항에 따른 기능대학(국가가 설립한 기능대학은 제외한다)의 중요 사항 변경 인가에 관한 권한(제39조의 2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탁한다.</u>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50조제1항¹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권한은 기능대학 및 해당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 및 그 취소, 교원의 임면보고 수리 및 해직·해임 등의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인바, 기능대학의 중요 사항 변경에 대한 인가 권한은 부재한 상황임.

한편, 「고등교육법」 제4조제3항¹¹⁾에서는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기능대학 설립·경영자로 하여금 기능대학의 폐지 또는 명칭 및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되(안 제39조제5항 신설), 중요사항 변경 인가 권한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

10)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0조(기능대학에 대한 감독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능대학 및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교육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탁받아 관장한다.

1. 기능대학 및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2.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 및 그 취소
3. 학교법인이 설립한 기능대학의 교원의 임면보고 수리 및 해직·해임 등의 요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생략)

11) 「고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50조제2항).

개정안은 기능대학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기능대학의 중요 사항 변경 인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그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다고 봄.

다만, 기능대학은 기능대학의 설립·경영과 관련하여 현행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 교육 관계 법령 중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데, 「고등교육법」 제2조는 전문대학을 학교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고,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그 근거가 완전히 부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¹²⁾

12) 고용노동부는 기능대학과 전문대학의 근거 법령과 관리·감독의 주체가 상이하고, 기능대학은 고용노동부가 관리·감독하므로 설립 이후 중요 사항 변경 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다면 경영 혼선 및 이중감독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임.

4. 기능대학 분교 설치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기능대학 설립·경영자가 국내에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가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기능대학 설립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39조의2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39조의2(기능대학 분교의 설치) ①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는 국내에 분교(分校)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기능대학 분교의 설립 ¹³⁾ ·경영 인가, 설치기준, 폐지 및 중요사항 변경 인가 등에 관하여는 제3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능대학”은 “기능대학 분교”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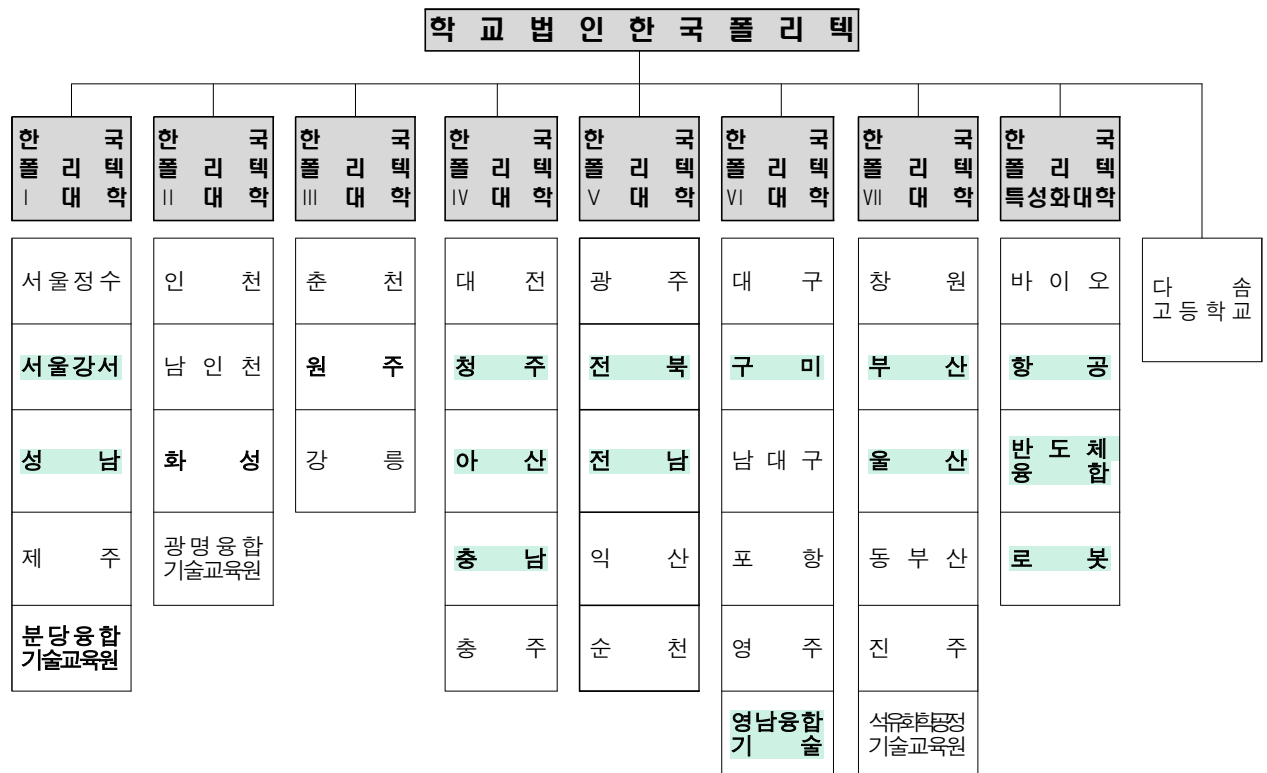
나. 검토의견

현행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는 기능대학의 분교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현행법 시행령 제35조는 기능대학의 분교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¹⁴⁾

13) 제1항에서 분교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립”을 “설치”로 하고, 제3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준용 시 “설립”을 “설치”로 보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동 시행령에 따라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학의 8개 대학에 14개의 분교가 설치되어 있으나 동 시행령 규정은 법률의 위임 근거가 없음. 이에 개정안은 기능대학의 분교¹⁵⁾ 설치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그림] 한국폴리텍대학의 조직도



※ 굵은 글씨로 음영 표시된 곳이 분교임

1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5조(기능대학의 분교) 기능대학의 분교 설치에 관하여는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5) 본교, 분교, 캠퍼스의 차이는 다음 표와 같음

구분	본교	분교	캠퍼스
정원	설치 시 교육부장관 인가	좌동	본교에서 정원 일부 이전 (교육부장관 인가 필요)
설치 관련 법령 체계	평생직업능력법 제39조	평생직업능력법 시행령 제35조	고등교육법 제4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조
4대요건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재산 등 4대요건 모두 적용	4대 요건 모두 적용	교사 및 교지만 적용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 은 대학전체 확보율 적용)
효과	-	독립된 캠퍼스로 본교와 중복 학위과정 운영 가능	독립된 캠퍼스로 본교와 중복 학위과정 운영 곤란

분교는 본교와 마찬가지로 설치할 때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교육과정 등에서 본교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¹⁶⁾

개정안은 기능대학이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능대학이 분교를 통해 지역·산업이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다만, 기능대학은 현행법 제52조에 따라 현행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 관계 법령 중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고등교육법」 제2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내외에 분교를 설치할 수 있으므로,¹⁷⁾ 현행 법체계에서도 분교를

16) 「고등교육법」 제24조(분교) 학교(주: 고등교육기관)의 설립자·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내외에 분교(分校)를 설치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분교의 인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외 분교의 설치인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설립인가기준 등) ①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대학설립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기준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교육과정 등 교육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대학의 분교를 설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7)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능대학의 설립·경영과 관련하여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 관계 법령 중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고등교육법」 제24조(분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내외에 분교(分校)를 설치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외 분교의 설치인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설립인가기준 등) ①대학을 설립하려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설치할 근거가 부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개정안은 기능대학의 국내 분교 설치 근거만을 신설하고 있지만, 「고등교육법」 제24조제4항에서는 국내 분교뿐만 아니라 국외 분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대학설립의 인가(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개교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교사(校舍) 및 제5조에 따른 교지를 확보할 것
2.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6조에 따른 확보 기준의 2분의 1 이상 확보할 것. 이 경우 나머지 교원은 학생정원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보하되, 편제완성연도 전까지 모두 갖추어야 한다.
3. 제7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할 것(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교육부장관은 대학설립을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교육과정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개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설립주체는 제1항에 따라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설립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대학의 분교를 설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국외에 대학의 분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교를 설립하려는 국가의 법령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을 조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⑤ ~ ⑨ (생략)

5.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요건 변경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이 있는 사람을 현행 ‘같은 계열의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서 ‘같은 계열의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거나 같은 계열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고, 관련 분야의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변경하는 내용임(안 제40조의2제4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0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 등) ① ~ ③ (생략)	제40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u>같은 계열의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재직 한 경력이 있는 사람</u> 으로 한다.	④ ----- ----- <u>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u> ----- ----- -----.
<신설>	1. <u>같은 계열의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거나 같은 계열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u>
<신설>	2. <u>관련 분야의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u>

나. 검토의견

학위전공심화과정은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 교육을 촉진·지원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전공심화과정으로, 그 과정에 입학하기 위한 요건으로 같은 계열의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이 요구되며, 입학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¹⁸⁾

한국폴리텍대학은 2012년부터 2년 연한의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2023년도 입학 기준으로 기계설계공학, 전기공학 등에서 정원 200명 중 128명이 등록하여 64%의 입학 등록률을 보이고 있음.

18)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0조(과정의 구분 등) ① 기능대학의 교육·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과정으로 구분한다.

1. 다기능기술자과정: 둘 이상의 직종에 관한 기능과 지식을 고르게 보유함으로써 제품의 개발로부터 제작에 이르는 전 공정에서 생산성 향상과 기술적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과정

1의2. 학위전공심화과정: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촉진·지원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전공심화과정

(이하 생략)

제40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 등) ①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관련되는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를 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은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으로 본다.

④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계열의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의 기준, 입학자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 2023학년도 한국폴리텍 전공심화과정 입학 현황

(단위: 명, %)

	캠퍼스	계열	학과	구분	정원	등록인원	등록률
한국 폴리텍	총계				200	128	64.0
	서울정수	소계			40	24	60.0
		기계설계	기계설계공학	야간	20	11	55.0
		전기	전기공학	야간	20	13	65.0
	인천	소계			100	55	55.0
		금형	금형공학	야간	20	11	55.0
		자동화	메카트로닉스공학	야간	20	9	45.0
		자동차	자동차공학	야간	20	16	80.0
		전기	전기공학	야간	20	11	55.0
		정보통신IT	정보통신공학	야간	20	8	40.0
	창원	소계			60	49	81.7
		기계	기계공학	야간	20	20	100.0
		자동화	메카트로닉스공학	야간	20	20	100.0
		전기	전기공학	야간	20	9	45.0

※ 자료: 고용노동부

현행법은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을 갖춘 사람을 ‘같은 계열의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이 ‘같은 계열의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그 이후에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해석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개정안은 학력 요건과 경력 요건 취득의 선후관계와 무관하게 두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제처 ‘현장전문성 존중을 위한 자격요건 법령정비’ 추진과

제의 일환임.

**[표] 법제처 ‘현장전문성 존중을 위한 자격요건 법령정비’
추진과제의 유형**

1. 학력 등 취득 전 경력 인정
 - ▲학력과 경력을 상호보완적으로 규정한 경우
 - ▲경력 외에 기초적 소양에 해당하는 학력요건을 요구하는 경우
 - ▲학력요건 취득 이후의 경력으로 한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 ▲자격증 취득 전 업무 경험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복수 요건 간 시간적 선후관계 명확화
 - ▲고도의 전문적 지식 등 습득이 실무경험에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
 - ▲그 밖에 학력 등 취득이 실무경험보다 먼저 필요한 경우 등
3. 자격 취득 시 경력 요건 완화

※ 추진 대상 법령은 참고자료 참조

법제처는 자격요건의 선후관계에 대한 법령해석이 다수 요청되는 상황으로 문언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사안에 따라 선후관계를 긍정한 사례와 부정한 사례가 각각 존재하여 일반 국민 입장에서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표] 학위 취득 전 경력을 인정한 사례와 부정한 사례

학위 취득 후 경력만 인정한 사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 2 관련	학위 취득 전 경력도 인정한 사례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관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의 자격기준)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u>취득</u> 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u>실무 경력</u> 이 1년 이상인 사람 → 실무 경력은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과정 이수한 <u>이후</u> 경력으로 한정된다고 해석	(산업체 재직자 특별전형 대상 규정)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을 <u>졸업</u> 한 사람으로서 산업체 <u>근무 경력</u> 이 3년 이상인 재직자 → 근무 경력은 학력 요건을 충족 전 <u>경력</u> 도 포함된다고 해석

※ 자료: 고용노동부

개정안은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 전 실무 경력도 동 학위과정의 입학 요건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한편, 개정안은 학력 요건에서 “같은 계열에서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추가하였는데, 이는 시행령에서 운영 중인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참고

유형별 법령 목록

〈선후관계가 문제되는 법령〉

번호	소관부처	법령형식	법령명	조문
1	기획재정부	대통령령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5조
2	기획재정부	대통령령	담배사업법 시행령	별표2
3	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4	교육부	법률	교육공무원법	별표1
5	교육부	법률	유아교육법	별표2
6	교육부	법률	초·중등교육법	별표2
7	교육부	대통령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
8	교육부	대통령령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5
9	교육부	대통령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별표1
10	교육부	대통령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2
11	교육부	대통령령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1의2
12	교육부	대통령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13	교육부	부령 등	진로교육법 시행규칙	별표
14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대통령령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15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대통령령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제4항
16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대통령령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7조
17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대통령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7
18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대통령령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별표
19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부령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20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부령 등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
21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부령 등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
22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부령 등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2
23	법무부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4호

24	법무부	대통령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3
25	법무부	대통령령	상법 시행령	제37조 & 제41조
26	법무부	부령 등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
27	법무부	부령 등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
28	국방부	대통령령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3조
29	국방부	대통령령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조
30	국방부	대통령령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31	국방부	대통령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32	행정안전부	법률	온천법	제7조제2항제1호
33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별표1
34	행정안전부	부령 등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35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공연법 시행령	제3조 & 별표 1의3
36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제8조
37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3
38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1
39	문화체육관광부	부령 등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별표7의2, 별표 12, 별표 24
40	문화체육관광부	부령 등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제9조의2
41	농림축산식품부	법률	수의사법	제16조의2
42	농림축산식품부	법률	축산법	제37조제2항
43	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44	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령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45	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령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별표

46	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령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1조의5, 제11조의7
47	농림축산식품부	부령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 별표5, 별표31
48	농림축산식품부	부령 등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49	농림축산식품부	부령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5
50	농림축산식품부	부령 등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51	농림축산식품부	부령 등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6조
52	농림축산식품부	부령 등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4
53	농림축산식품부	부령 등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
54	산업통상자원부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5호
55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령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
56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령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57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별표1
58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령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59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령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31조
60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
61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령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2의2
62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령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3
63	산업통상자원부	부령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6
64	산업통상자원부	부령 등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5	산업통상자원부	부령 등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
66	산업통상자원부	부령 등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3
67	보건복지부	법률	국민연금법	제104조제3항제3호
68	보건복지부	법률	의료법	제54조제3항제4호
69	보건복지부	법률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제2항제1호, 제72조의3제2항
70	보건복지부	법률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6조
71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4
72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6조
73	보건복지부	부령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0의3
74	보건복지부	부령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6
75	보건복지부	부령 등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76	보건복지부	부령 등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1
77	보건복지부	부령 등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78	보건복지부	부령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6
79	보건복지부	부령 등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80	환경부	대통령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81	환경부	대통령령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1, 별표 2
82	환경부	대통령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83	환경부	대통령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2
84	환경부	대통령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별표1
85	환경부	대통령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6
86	환경부	대통령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의2
87	환경부	부령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4
88	환경부	부령 등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89	환경부	부령 등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90	환경부	부령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
91	환경부	부령 등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4의3
92	환경부	부령 등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7

93	환경부	부령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94	환경부	부령 등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
95	환경부	부령 등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6
96	환경부	부령 등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97	고용노동부	법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0조의2제4항
98	고용노동부	대통령령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제2호
99	고용노동부	부령 등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11의4, 별표 16
100	고용노동부	부령 등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101	여성가족부	대통령령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102	여성가족부	대통령령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별표1
103	여성가족부	대통령령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104	여성가족부	대통령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105	여성가족부	부령 등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1
106	국토교통부	법률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호
107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108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109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및 별표 11
110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0조제4항
111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6조
112	국토교통부	부령 등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별표 22의3
113	국토교통부	부령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114	국토교통부	부령 등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별표2
115	국토교통부	부령 등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별표1
116	국토교통부	부령 등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
117	국토교통부	부령 등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5
118	국토교통부	부령 등	하천법 시행규칙	제21조
119	해양수산부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3항제2호및제3호

120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3조의4, 제24조의2
121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122	해양수산부	부령 등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4
123	해양수산부	부령 등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9
124	중소벤처기업부	대통령령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125	중소벤처기업부	대통령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
126	중소벤처기업부	대통령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3조, 제23조, 제41조
127	인사혁신처	대통령령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의2
128	식품의약품안 전처	법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2호
129	식품의약품안 전처	대통령령	약사법 시행령	제26조
130	식품의약품안 전처	부령 등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131	식품의약품안 전처	부령 등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1조
132	식품의약품안 전처	부령 등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2조
133	식품의약품안 전처	부령 등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
134	방위사업청	대통령령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5조
135	경찰청	법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제3호, 제20조제2항제2호
136	경찰청	법률	도로교통법	제76조제2항제2호
137	경찰청	부령 등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표3
138	소방청	대통령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139	소방청	부령 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1
140	소방청	부령 등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13
141	문화재청	대통령령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7조
142	문화재청	부령 등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143	산림청	대통령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5
144	산림청	대통령령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145	산림청	대통령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146	산림청	대통령령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11조의13
147	산림청	부령 등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148	질병관리청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
149	기상청	부령 등	기상법 시행규칙	별표1
150	해양경찰청	법률	해양경찰법	제15조의2제2항제3호
151	금융위원회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나목, 제28조제3항제2호나목
152	금융위원회	법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9조제2항제3호
153	금융위원회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7제4항제1호나목
154	금융위원회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제1항제2호
155	금융위원회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제76조의3제4항제1호나목
156	금융위원회	대통령령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	제20조
157	금융위원회	대통령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6조
158	금융위원회	부령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159	원자력안전위 원회	대통령령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5
160	원자력안전위 원회	부령 등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2

※ 자료: 법제처

6. 반환금·추가징수금 징수 관련 준용규정 변경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 현행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하는 것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려는 내용임(안 제56조제5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6조(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및 추가징수) ① ~ ④ (생략)	제56조(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및 추가징수) ① ~ ④(생략)
⑤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 ----- ----- ----- --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정부의 수입은 부과·징수 주체 및 수입의 성격에 따라 국세, 국세외수입, 지방세, 지방세외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국민이 국세 등의 금전납부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의 행정상 강제징수 절차는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중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이라 함)은 지방세외수입 중에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과징금, 기타 조세 외의 금전을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체납처분 및 징수가 이루어지게 됨.

현행법 제56조제5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정수급 등에 따른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을 강제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이 제정·시행되기 전의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른 것으로 보임.¹⁹⁾

금전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간접적 의무이행확보수단은 국민에게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현행법과 같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준용하는 경우 체납처분 외에 다른 간접적 의무이행확보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함.²⁰⁾

19) 법률 제11272호(2012.2.1. 일부개정, 2012.7.2. 시행) 제56조(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및 추가징수) ④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법률 제11998호)은 2013.8.6. 제정되어 2014.8.7. 시행되었음.

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의2 제1항의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은 그 문언이나 법규정의 형식상 국세징수법중 제3장에서 규정한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는 소위 자력집행권이 있음을 규정한 것이지, 국세, 지방세가 저당권부채권등에 우선한다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도 준용됨을 규정한 것이라 볼 수 없다(대법원 1990. 3. 9. 선고 89다카17898 판결)

같은 조례 제21조 제2항에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부과권의 행사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으로,

강제징수 절차의 준용범위를 명확히 하여 집행 과정에서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점과 징수 시 지방세 과세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명단공개 등 금전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간접적 의무이행확보수단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다고 봄.

[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상 간접적 의무이행 확보수단

구 분	내 용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법 제6조)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 또는 정리보류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정리보류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체납자 또는 정리보류자에 대한 각종 금융제재 등이 가해질 수 있음.
관허사업의 제한 (법 제7조의2)	체납자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부과 대상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에 대한 허가·인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체납자의 명단공개 (법 제7조의3)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음

개정안은 법률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성격의 지방세외수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보다 폭넓은 수단을 이용하여 반환금 또는 추가징

도로수익자부담금을 지방세법에 규정된 징수 체납처분 등의 강제징수절차에 따라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징수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지 부담금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하여도 지방세법 제30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14639판결)

수금을 징수함으로써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다는 데 입법의 의의가 있음.

7.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결격사유에 따른 자격취소 시 청문 절차 생략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62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2조(청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2조(청문) ----- ----- ----- -----.
1. ~ 4. (생 략)	1. ~ 4. (생 략)
5. 제35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5. 제35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34조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제1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2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제3호),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제4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5호), 위 사유 외의 사유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6호) 등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²¹⁾

제35조제1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제3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²²⁾

한편, 제62조제5호에서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²³⁾ 청문이

21) 제3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35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2) 제3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2. 제3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4. 자격증을 빌려 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3) 제62조(청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제35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6. 7. (생략)

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의미함.²⁴⁾

그런데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처분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되는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

[표] 청문 실시 범위에 대한 현행과 개정안의 비교

현 행	개정안
제35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35조제1항 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이에 개정안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제34조에서 정하고 있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되는 경우 등의 사유)에 따른 훈련교사 자격취소처분 시 청문 절차를 생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훈련생을 신속하게 보호하려는 취지임.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행정청이 인허가 등의 취소 또는 신분·자격의 박탈 등의 처분을 할 경우에는 청문 의무가 발생하나 같은 조 제4항 및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 생략이 행정청의 재량사항인바,²⁵⁾ 개정안은 해당 사항에 대하여 필요적 청문 대상

24) 「행정절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행정절차법」 규정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25)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 가. 인허가 등의 취소
 - 나. 신분·자격의 박탈
 -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8. 제29조제6호 조문 정비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을 수 없는 대상에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9호 사유로 제재 처분 기간에 있는 자를 추가하고 같은 항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는 내용임(안 제29조제6호).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결격사유)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지정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8조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29조(결격사유)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u>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u> 의 규정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6. <u>제3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u> ----- ----- ----- ----- -----
7. ~ 10. (생략)	7. ~ 10. (생략)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29조는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

그런데 2021년 8월 17일 법률 개정에 따라 제31조제1항에 제1호가 신설되면서 종전의 제1호부터 제8호까지는 내용의 변화 없이 제2호부터 제9호까지로 이동되었으나(법률 제18425호), 제29조제6호에는 이러한 개정사항(제31조제1항제1호 신설)이 반영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음.

개 정 전	개 정 후
제31조(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u>제1호 또는 제3호</u> (제29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1조(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 ① ----- ----- ----- ----- ----- ----- ----- <u>. ---- 제2호 또는 제4호</u> ----- ----- ----- ----- -----.
<신 설>	1. <u>제10조의2</u> ²⁶⁾ 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1. ~ 8. (생략)	2. ~ 9. (현행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

이에 개정안은 종전 개정 조문 중 입법 미비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38

26) 제10조의2(감염병에 관한 조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훈련생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에 대하여 해당 훈련시설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